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2398
------------	------

2025년 2월 27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성흠제 의원 외 22명

나. 제안일자 : 2025년 02월 03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02월 06일

라. 상정일자

○ 제328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2025년 2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성흠제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상용화 및 모빌리티 도시 창출을 위해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지구를 조성·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자율주행은 편리함과 동시에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사고 위험을 관리하고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 안전운행 준수 관련 조항 중 기존에 정의했던 법령 외에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자율주행의 법·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뒷받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을 위해 시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함. (안 제3조 신설)
-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항목을 추가 신설함. (안 제9조제7항 신설)
-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안전운행 준수를 위해 관련 법령 명확화 (안 제11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02.11. ~ 2025. 02.15.

○ 제출의견 : 의견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

○ 제출의결: 수정가결

- 법령 명칭에 관한 약칭을 정의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자치입법 체계상 자구를 붙임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 제안이유와 개정안의 취지에 이견 없이 동의함

1) 미래첨단교통과-2148호(2025.2.14.)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²⁾과 상용화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관련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자율주행을 운행하는 자가 안전운행을 준수하도록 상위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시장의 책무 신설 관련(안 제3조)

- 동 개정조례안 제3조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²⁾과 상용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5항²⁾에서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를 위하여 해당 연도의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하반기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의 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작성 및 세부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성과보고서 세부평가 기준³⁾에는 시범운행 지구의 안전관리 실적과 서비스 운영계획 이행도 등을 세부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게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과 상용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신설하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임

■ 위원회 운영 및 안전운행 준수 법령 추가(안 제9조제7항, 안 제11조제1항)

○ 안 제9조제7항은 현행 조례에서 위원회⁴⁾ 운영과 관련해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운영

3)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보고서 작성방법 및 평가기준'

3. 성과보고서 작성내용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

2)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달성도

가) 서비스 운영계획 이행도

나) 시설 관리 실적 및 시설 구축계획 이행도

다) 재정적·제도적 지원 실적

라) 안전 관리 실적

마) 갈등 관리 실적

4)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범운행지구 운영·관리 및 확대 등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범운행지구 기본정책과 확대에 관한 사항 2.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정책(재정지원, 요금정책 등) 및 안전운행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3. 자율주행협력 시스템 등 자율주행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 면허 발급, 연장, 정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시범운행지구 운영·관리 및 확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방안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당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현행 조례에서는 시범운영 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시범운영·여객운송을 목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동 개정조례안 제11조제1항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도 준수하도록 추가 규정하는 것으로 동 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안전한 운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임

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흠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398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2월 03일
발 의 자: 성흠제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 경, 김규남,
김동욱, 김성준, 김원태,
남창진, 박승진, 박영한,
박철성, 봉양순, 서상열,
송도호, 유정희, 이상훈,
이영실, 이종태, 이종환,
임종국, 정준호, 한 신,
홍국표 의원(22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상용화 및 모빌리티 도시 창출을 위해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지구를 조성·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자율주행은 편리함과 동시에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사고 위험을 관리하고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 안전운행 준수 관련 조항 중 기존에 정의했던 법령 외에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자율주행의 법·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뒷받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을 위해 시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함. (안 제3조 신설)
- 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항목을 추가 신설함. (안 제9조의7항 신설)

다.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안전운행 준수를 위해 관련 법령 명확화 (안 제11조의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며, 제20조의2를 제21조의2로 하며, 제21조를 제22조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시범운행지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중전의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제5호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중전의 제9조)제4항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10조)제1항 중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으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1조)제2항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제1항”을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3조)제1항 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
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
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생 략)
2. ~ 4. 삭 제
5. 제6조에 따라 회피신청 대상
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
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⑥
(생 략)

<신 설>

제9조(분과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에 관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
다.

제10조(안전운행 준수) ① 시범운
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에 대한 연구·시범운행·여객
운송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
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

-----.

1. (현행과 같음)

5. 제7조-----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원장이 정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
----- 제9조-----
--.

제11조(안전운행 준수) ① -----

----- 「자율주
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

안전운행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1조(면허신청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상운
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
급 시 안전운행 검증을 위해 60
일(30일 이내의 시범운행기간
포함) 이내의 범위에서 제9조의
안전분과위원회를 통해 자율주
행자동차의 기술 및 안전운행능
력 등을 검증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12조(사업계획 변경) ① 제11조

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
정운수면허를 받은 자가 운행지
역·노선·시간·요금 등 이미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
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계획 변
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2. (생략)

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
법」, 「도로교통법」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면허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10조-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업계획 변경) ① 제12조

-----.

1.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수요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단순 변경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1. 2. (생략)

제13조(허가 기간 또는 면허 기간 연장 등) ① 제11조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는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4조 ~ 제21조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16조제1항-----

-----.

1. 2. (현행과 같음)

제14조(허가 기간 또는 면허 기간 연장 등) ① 제12조-----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 ~ 제22조 (현행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을 위해 시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3조),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항목을 추가 신설하며(안 제9조의7항),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안전운행 준수를 위한 관련 법령을 명확화(안 제11조의1항)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손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